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아동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 강화와 아동정책의 기본적 사항 규정 》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34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2. 조문별 검토	9
가.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 및 제2조)	9
나. 정의(안 제3조)	12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14
라. 책무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6
마. 특별보호아동 지원(안 제9조)	19
바. 아동의 권리 보장(안 제2장)	22
1) 중점 검토 필요사항	22
2) 출생등록권 및 친생부모를 알 권리(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25
3) 생존권 및 건강에 관한 권리(안 제10조제4항부터 8항까지)	28
4) 보호권 및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안 제11조)	30
5) 쉼 권리 및 놀 권리(안 제12조제6항)	33
6) 헌법과 중복되는 규정(안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등)	35

사.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7
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안 제17조)	39
자. 아동권리옹호관의 설치 및 진정제도 도입(안 제20조)	43
차. 아동친화적 사법절차 마련(안 제21조)	47
카. 부칙 등(안 부칙)	49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훈식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7. 3.

(3) 회 부 일 : 2024. 7. 4.

2.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이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동의 권리 실현과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으로서 협약 당사국의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당사국의 구체적 입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의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함. 또한 특정 정책에 따른 아동 관련 개별 법률은 부처 간 협력의 어려움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 정책 시행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와 사각 지대 발생의 문제가 있음.

이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

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민, 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부터 제8조까지).

다. 아동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짐(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17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아동안전 등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

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9조).

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정책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개선을 위한 아동권리옹호관을 두고,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Ⅱ. 검토 의견

1. 총괄적 검토

- 제정안은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 등의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4개의 장과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임.

< 제정안의 구성체계 >

구 분	제정안
제 명	「아동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보호자의 책무)
	제7조(국민의 책무)
	제8조(기업의 책무)
	제9조(특별보호아동 지원)
제2장 아동의 권리 보장	제10조(생존권)
	제11조(보호권)
	제12조(발달권)
	제13조(참여권)
제3장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4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6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17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8조(아동종합실태조사)
	제19조(아동정책영향평가)
제4장 아동의 권리구제 등	제20조(권리구제 등)
	제21조(아동친화적 사법절차)
	제22조(비용 보조)

- 제정안은 아동의 권리와 그 보장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보호대상으로서의 아동이 아닌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아동복지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하고, 아동 권리의 구제를 위해 새로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아동권리옹호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아울러 아동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개 권리를 규정하면서 4개 권리별로 세부적인 권리를 열거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함)을 비준한 지 32년이 경과하였음.

< 「아동권리협약」 개요 >

- **(내용)**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 인권 협약으로 우리나라 포함 **196개국**이 비준

- 본 협약(전문 및 54개 조항), 선택의정서(비준국이 자율 채택)로 구성

< 협약 주요 내용 >

- **(생존)** 아동이 기본적인 삶(주거, 영양, 보건 등)과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
- **(보호)**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
- **(발달)**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여가, 문화생활과 정보,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
- **(참여)** 아동이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경과)**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만장일치 채택('89.11.20)

- 우리나라는 본 협약 비준('91.11월) 이후 선택의정서 2개 비준('04.9월)

* 선택의정서 3개 중 2개 비준 (①아동의 무력분쟁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②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1개 미비준 (③개인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 그간 우리나라는 「청소년 기본법」 제정(1991) 및 전부개정(2004. 2.), 「청소년 보호법」 제정(1997) 및 전부개정(2011.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2004) 및 전부개정(2012. 2.) 등을 통해 아동 관련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여전히 보호의 대상일 뿐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크고, 삶의 질 수준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022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¹⁾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2017년 6.99점에서 2020년 6.80점으로 감소하였고, 긍정정서(행복)는 같은 기간 7.29점에서 7.19점으로 저하되었으며, 우리나라 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국가 중 하위권임.

<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 (2018) >

(단위: %)



주: 1) 만 15세를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측정결과임

2)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0~10점 척도 응답 중 6점 이상 응답한 비율임

출처: UNICEF Innocenti, (2020), "Worlds of Influence: Understanding what shapes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16(원출처: OECD PISA 자료 활용)

□ 아동의 사망원인 1위로서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019년 2.1명에서 2021년에는 2.7명으로 증가하였음.

1) 통계청,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 2022. 12.

< 자살률 (2000~2021) >

(단위: 명/1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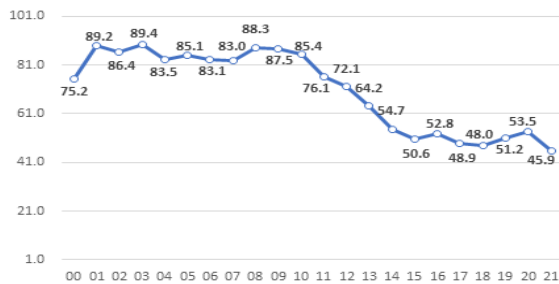


주: 1) 0~17세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해당 연령 인구 10만명 당으로 계산한 수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원자료

□ 그 외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발생원인 중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2000~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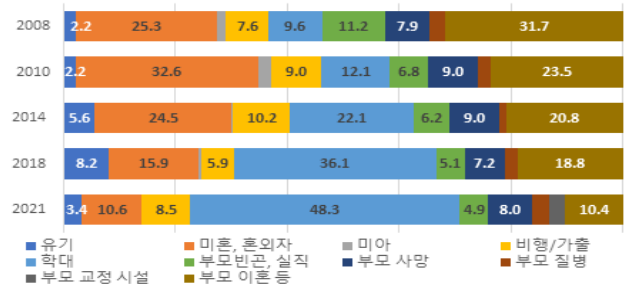
(단위: 명/10만 명)



주: 1) 0~17세를 대상으로 함
2) 발생률 = (보호대상아동 총계 ÷ 추계인구) × 100,000
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 (2008~2021) >

(단위: %)



주: 1) '08년부터 발생요인 항목 변경('21년 부모교정시설 추가)
2) 미아, 부모질병, 교정시설은 3% 이하로 값표시하지 않음
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 이러한 상황이지만 아동의 권리 증진과 관련된 현행 법 체계를 보면, 「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으로서²⁾ 아직까지 해당 협약에 근거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법 성격의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현행 「아동복지법」 등 아동 관련 법 체계는 취약아동 등 일부대상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제정안이

2) 1989년 협약이 체결된 이후 전세계 196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 비준 후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노력을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는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2월에 7차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임.

마련되는 경우 아동은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함과 아울러 아동정책 수립 및 관련 입법의 기본적인 틀로서 아동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그 권리를 신장함에 있어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아동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 방식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금번 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동 관련 법제와 정책 전반의 기본 방향 제시를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및 단체 의견 >

구분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기존 아동 관련 법제는 취약아동 등 일부 대상에 국한된 측면이 있어 국가차원의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아동 관련 법제와 정책 전반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선행이 필요함. ○ 다만, 「아동기본법」은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이 아니라, 정책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므로 이 법만으로 업무 관할의 충돌이나 조정 필요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청년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청년(19~34세)과 청소년(9~24세)간 중첩이 있었으나 관할권 논란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 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대부분 중복되고, 9~18세 미만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과 중복 적용을 받게 되며, 개별법에서 다루어야 할 권리 조항과 권리구제 절차를 기본법에 포함하여 기본법의 체계적 정합성에 맞지 않음.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 및 제2조)

- 제정안은 아동의 권리, 국가 등의 책임, 아동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실현 등을 기본이념에서 규정하면서, 목적규정에서 기업의 책임을, 기본이념 규정에서 아동의 참여 보장, 「아동권리협약」상 아동권리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각각 두고 있음(안 제1조 및 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의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권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정안에서는 아동은 성장과정에 있는 사람임을 고려하여 그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외에 가정, 사회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참여 보장, 아동 권리 차별 금지 등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는바,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1조의 목적 조문에서는 가정, 사회, 국가 및 지자체 외에 기업의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도 추가하여 정하고 있음.

이처럼 기업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³⁾ 영리활동, 고용 등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권리 존중 및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됨⁴⁾. 참고로 기업의 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둘째, 기본이념 조문(안 제2조) 중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권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차별금지와 관련된 사항은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적인 원칙 중 하나로서 「아동기본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구체화하여 재규정할 필요도 있겠음. 특히 구체화하는 과정에 ‘언어’를 추가함으로써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표명이 언어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

3)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발표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그리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2년 유니세프,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CRBP)’을 공동 발표하였음. 유니세프누리집(<https://www.unicef.or.kr/what-we-do/advocacy-for-children/public-private-partnership/childrens-rights-and-business/>)

4) 안 제8조에서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목적 규정과 동일과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일본 「아동기본법」에서 사업주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고용하는 노동자의 직업생활 및 가정생활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고용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배건이, 「입법시 아동중심의 관점에 대한 고찰」,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한국입법학회, 2022, p.38.

□ 참고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⁶⁾하고 있음.

6)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정의(안 제3조)

- 제정안에서는 아동과 보호자 등 2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이 정의 규정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한편, 제정안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그 외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

< 관련 법률의 연령 규정 >

법률	대상	연령
「아동기본법안」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기본법」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 이에 따라 「아동기본법안」 상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과 중첩되는 연령이 존재하게 되며, 연령에 따라 「아동기본법안」과 「청소년 기본법」 2가지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도 있게 됨. 이러한 경우, 법 적용에 있어 일부 중복의 문제도 있겠으나, 연령 기준을 중첩적으로 마련하여 개별 법령의 특성에 맞게 아동과 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동기본법안」은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이 아니라, 정책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므로, 이 법만으로 업무 관할의 충돌이나 조정 필요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청년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청년(19~34세)과 청소년(9~24세)간 중첩이 있었으나 관할권 논란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그 외, 「아동기본법안」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만큼, 아동·보호자 외에 추가적인 정의규정을 통해 아동과 관련된 여타 법률과의 포섭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음⁷⁾.

7)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청소년 복지에 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마련되는 구조임.

<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체계 예시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정의)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청소년기본법</u>」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 “청소년복지”란 「<u>청소년기본법</u>」 제3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 제정안에서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 또는 목적 등에 맞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아동의 권리 보장 등 아동정책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아동의 권리 보장 등 아동정책 관련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⁸⁾, 제정안이 기본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으나, 「청소년 기본법」(제4조)에서도 청소년 육성⁹⁾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안과 같은 방식의 법 규정도 가능하다고 하겠음.
-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8)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p.258.

9) 「**청소년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및 관계 단체 의견 >

구분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 제정안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될 경우 「민법」의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능력 제한(제5조) 및 친권자의 자녀 보호 및 교양할 권리의무(제913조)와 충돌하고, 구체적으로 제정안의 실 권리 및 놀 권리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임.

라. 책무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제정안에서는 책무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보호자의 책무(안 제5조 및 제6조)와 함께 국민의 책무와 기업의 책무(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특징적인 세부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5조제5항).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익,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예산과 담당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의 책무) ① 기업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아동의 권리 존중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첫째,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책임을 부여할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관련 입법례(「청소년 기본법」에서는 가정의 책임, 사회의 책임,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 보호자 외에 국민도 별도 조문화하여 각각에 대해 책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형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업의 책무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견 수렴을 통해 포함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일본의 「아동기본법」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직업생활 및 가정생활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¹⁰⁾하고 있음.

□ 둘째, 안 제5조5항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된 것임.

아동학대사례 중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로 나타나는데, 아동과의 소통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촉발된 아동학대는 학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부모의 통제 하에

10) 일본 「아동기본법」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고용하는 노동자의 직업생활 및 가정생활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고용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있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부모의 양육관을 아동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아동의 권리 등과 관련된 교육의 지속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제정안에 예비부모 교육을 포함하고, 생애주기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예산과 담당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운영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판단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참고로 「청소년 기본법」(제8조제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마. 특별보호아동 지원(안 제9조)

- 제정안에서는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난민아동, 북한이탈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가족돌봄아동 등을 포함해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을 ‘특별보호아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정책 및 시책의 수립과 관련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9조).

제9조(특별보호아동 지원) ①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난민아동, 북한이탈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학교 밖 아동, 범죄피해아동, 사법 절차상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가족돌봄아동 등을 포함해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이하 “특별보호아동”이라 한다)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그 고유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보호아동의 취약성을 인정하여 관련 정책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정안의 취지는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권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아동권리협약」(제22조¹¹⁾)에서도 난민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함.

11) 「아동권리협약」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 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한편, 이주배경아동이나 난민아동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의 복지급여 수급권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지원의 지속성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규정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등 일부 용어는 다소 포괄적이어서 그 의미의 해석이나 적용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보호종료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장애아동,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아동 관련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억원)

사업명	내용	예산(202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지원	454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 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용 아동이 이용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	523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아동, 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 등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1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486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의 초기비용 마련 지원	1,267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94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비용 지원	443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보건복지부는 이주배경아동·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사법절차상의 아동·가족돌봄아동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범위가 불분명하고,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의 개념도 추상적·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법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이 우려되므로, 정책방향 제시라는 기본법의 성격을 고려하여, 취약아동의 유형 등 구체적

내용은 기본법보다는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 목적이 강한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¹²⁾이며, 이 경우 「아동복지법」상 ‘지원대상아동’¹³⁾에 난민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가족돌봄아동 등 나열된 유형 중 상당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2)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청소년복지의 정의 및 포괄적 방향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청소년복지의 대상(위기청소년 등),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의견임.

13)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바. 아동의 권리 보장(안 제2장)

1) 중점 검토 필요사항

□ 제정안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아동을 강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금번 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임.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갖는다고 보고 있음.

생존권은 인간으로서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발달권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교육, 놀이, 여가를 누릴 권리와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을 누릴 권리임.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적 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함. 참여권은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¹⁴⁾.

□ 제정안은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 구분 방식을 수용하여 크게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4개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14) 배건이,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p.81에서 재인용.

< 제정안의 아동권리 내용 >

구분	제정안
생존권	○ 생존권 -생명권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 -친생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 -보건의료시설 사용권 -출생 전·후 건강관리를 보장 받을 권리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보호권	○ 보호권 -체벌, 집단 괴롭힘, 폭력,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치료 및 전문상담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유해한 업무·고용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 등을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 발달권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없는 교육 여건을 누릴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권리 -문화생활·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 -쉼 권리 및 놀 권리
참여권	○ 참여권 -자유로운 견해 표명권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쉬운 언어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 접근권 -자기정보 처리 관련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차별없는 참여권 -아동정책 과정에 의견개진권
비차별 원칙	기본이념에서 규정

□ 아울러,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직접 아동의 해당 권리를 명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제정안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법안에 어떤 내용과 범위를 규정할지와 관련하여서는 현실적 수용 여건과 아동의 권리 신장 및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의 아동의 권리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권리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는 방식이 정책 시행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이 있고, 국내 법제 경향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임.
- 한편, 제정안은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보호권의 범주에서 개별적 조항을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제정안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주에서 보장할 필요도 있을 것임.

< 보건복지부 및 관계 단체 의견 >

구분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아동의 권리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권리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는 방식이 정책 시행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이 있고, 국내 법제 경향에도 부합함.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 「아동기본법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입법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나, 동 협약에 있는 아동권리의 제한(제13조 제2항,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등), 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제18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비중 부여(제12조 제1항),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제7조 제1항) 등 중요 조항 ¹⁵⁾ 이 누락 되어 있음.

15)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2) 출생등록권 및 친생부모를 알 권리(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제정안에서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명문화하고, 입양 등으로 인해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아동이 그 부모를 알 권리를 규정하면서,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생존권) ②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은 친생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와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는 「아동권리협약」에도 규정¹⁶⁾되어 있는 권리로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기본권으로 인정¹⁷⁾한 바 있음. 사회가 복잡·다양해질수록 개인이 국가가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16) 「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17)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제공하는 정책의 수혜를 받거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사회적 신분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출생등록이 될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이를 「아동기본법안」에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한 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동의 출생등록권과 관련하여서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 대한민국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¹⁸⁾와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임.

- 한편, 친생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는 입양 등으로 인해 다른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역시 「아동권리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다만, 「입양특례법¹⁹⁾」에서는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의 공개청구를 통해 입양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친생부모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마9775 결정)

- 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 「입양특례법」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에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서도 친생부모의 사생활의 비밀 또한 보장되고 있기도 함.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17조) >

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①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한다)은 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이하 이 조에서 “증서공개청구”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장원장은 제9조 또는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장원장은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증서공개청구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생존권 및 건강에 관한 권리(안 제1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 제정안에서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권리를 규정하면서, 치료·회복을 위한 시설 사용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생존권) ④ 아동은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⑤ 아동은 출생 전·후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아동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아동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출생지역 등과 관계없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아동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아동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치료방법이 아동 눈높이에 맞게 설명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서비스는 아동의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나아가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도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들은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것으로,

특히 제정안에서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은, 시설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인력 및 기관의 부족으로 아동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국가적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 청주시 등의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를 보면, 건강에 관한 권리로서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과 부모를 위한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질병 치료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²⁰⁾하고 있음.

< 보건의료시설 이용권 인정 조례 >

지자체명	조례명
부천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청주시	「청주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동해시	「동해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성남시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

□ 다만, 제정안의 생존권 규정 중 제5항의 출생 전·후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받을 권리, 제6항의 생애주기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제7항의 차별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은 조항 간에 일부 중복되는 면도 있음.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시설의 사용권은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권리로서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0) 「아동권리협약」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4) 보호권 및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안 제11조)

- 제정안에서는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체벌, 집단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폭력 외에 학대로부터의 보호도 추가하고 있음(안 제11조제1항). 또한, 아동이 이러한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 및 전문상담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그 외에도 제정안에서는 아동이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심리적·도덕적 발달 등에 유해한 업무나 고용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안 제11조제3항), 책임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안 제11조제4항), 사생활·인격·명예를 보호받을 권리(안 제11조제5항)를 규정하고 있음.

- 제11조(보호권) ① 아동은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체벌, 집단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아동은 제1항에 따른 폭력과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및 이로 인해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전문상담가의 조력 등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심리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업무·고용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아동은 자신의 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고 인격 또는 명예를 침해받거나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첫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체벌, 집단 괴롭힘,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므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은 아동의 권리 규정에 담아야 할 필요

성이 크다고 보임. 부모의 체벌 근거로 여겨지던 「민법」의 징계권 조항²¹⁾이 삭제(2021. 1.)되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이 명확해졌고, 학교 내 집단 괴롭힘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폭력 뿐만 아니라 학대로부터의 보호 또한 규정하고 있음. 총괄적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학대 피해 아동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바, 기본법에서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겠음.

□ 둘째, 제정안에서는 자신의 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미성년자인 아동이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였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로 보이는바, 아동의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규정 필요성이 인정됨.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민법」 개정²²⁾전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상속 포기²³⁾나 한정승인²⁴⁾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

21) 구(舊) 「민법」(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2)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3)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함.

승인²⁵⁾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민법」 개정²⁴⁾에 따라,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이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보임.

24)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함.

25)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함.

5) 쉼 권리 및 놀 권리(안 제12조제6항)

- 제정안에서는 발달권을,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 없는 교육 여건을 누릴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권리,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발달에 필요한 쉼 권리와 놀 권리로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6항).

제12조(발달권) ①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은 인격, 재능 및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은 차별 없는 교육 여건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④ 아동은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아동은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⑥ 아동은 발달에 필요한 쉼 권리와 놀 권리를 가진다.

- 제정안은 아동에게 휴식과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²⁶⁾을 고려하여 쉼 권리 및 놀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등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판시²⁷⁾한 바 있음.

26) 이완정,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쉼 권리」,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기본법 제정 릴레이 아동권리포럼(제3회) 주제발표자료, 2022. 8. 4.

□ 쉼 권리와 놀 권리가 법제화될 경우, 실제 가정 등 아동의 생활 환경에서 쉼 권리와 놀 권리와 부모의 자녀양육권 등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²⁸⁾이 있는바, 쉼 권리와 놀 권리와 부모의 양육권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하겠음. 관련 사항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아동의 권리(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²⁹⁾한 바 있음.

□ 그 외 아동과 밀접한 생활세계인 보육 및 교육과정 마련 시 아동의 쉼 권리와 놀 권리에 대한 배려 규정이 「아동기본법」에 필요하다는 의견³⁰⁾이 있음.

27)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결정)

28) 정기상,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제1호, 헌법재판연구원, 2020, p.200.

29)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는바, 학생은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는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헌재 2000. 4. 27. 98헌가16, 판례집 12-1, 427, 455-456 참조),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27 결정)

30) 배건이,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10. p.162.

6) 헌법과 중복되는 규정(안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등)

- 제정안에서는 사생활 등을 보호받을 권리(제11조제5항),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3조제2항), 결사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제13조 제3항) 등의 경우 헌법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 헌법과 제정안의 유사한 규정 >

대한민국헌법	제정안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1조⑤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고 인격 또는 명예를 침해받거나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② 아동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0조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③ 아동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1조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그 외 차별 없는 교육 여건을 누릴 권리(안 제12조제3항) 및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권리(안 제12조제4항) 규정도 헌법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헌법과 제정안의 유사한 규정 >

대한민국헌법	제정안
제31조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③ 아동은 차별 없는 교육 여건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35조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④ 아동은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헌법상 규정은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특별히 기본법에 재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

사.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제정안에서는 아동정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구 분		제정안
아 동 정 책 기 본 계 획	수립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주기: 매 5년
	내용	○이전 기본계획 분석·평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 <u>특별보호아동 인권 보장 정책</u> ○ <u>교육 및 홍보</u>
	협의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확정 통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통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시 행 계 획	수립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주기: 매년 ○연도별 및 <u>지역별</u> 통합 규정

-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관하여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그 외,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제정안의 내용에 추가로 반영될 필요도 있을 것임.

□ 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의견 >

부처(지자체)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현재 지자체는 국가의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맞춰 연차별 시행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국가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 수립이 필요함.
인천광역시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주체에 시·군·구청장을 포함하여 아동정책의 시행주체로서 정책발굴 및 아동 기본권 신장 노력 등을 자체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안 제17조)

□ 제정안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제10조)³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명칭도 「아동복지법」상 명칭과 동일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 규정함(안 제17조).

「아동복지법」과의 차이를 살펴 보면, 제정안의 경우 그 구성을 29명 이내(「아동복지법」: 25명 이내)로 확대하면서, 정부측 당연직 위원으로 환경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을 추가하고, 그 외 민간위원으로 아동대표도 추가하고 있음.

구분	제정안
명칭 소속	○ 명칭: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소속: 국무총리
업무	○ 심의 및 조정

- 31)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제정안
	-기본계획 수립 및 <u>변경</u>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 -부처 간 조정 및 협조 -<u>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u>
구성	○ 위원장 포함 <u>29명</u> 이내 ○ 위원장: 국무총리 ○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환경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아동권리 관련 <u>민간단체 추천</u> 15명 이내의 위원 -<u>아동대표</u>

□ 첫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임. 상기한 바, 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 외에 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추가하면서 아동대표도 위원 구성에 포함하고 있음.

환경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도 아동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밀접성이 높은 기관인 만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특히, 아동대표의 포함과 관련하여 아동대표의 추천방식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아동정책 수립 등에 당사자인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의사표명권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 입법례로 「청소년기본법」(제10조제4항제16호³²⁾)에서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에

32)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④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설치)의 위원으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을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의 방송내용,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사후심의를 담당하는 민간독립기구³³⁾로서, 방송통신사업자의 인·허가 및 관련 규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는 구별되는 기관임.

- 한편, 민간위원과 관련 제정안에서는 아동권리 관련 민간단체 추천 15명 이내의 위원과 아동대표로 규정하고 있음. 가장 적합한 위원 선임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동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이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임.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에 관한 컨트롤타워적 성격을 지닌 핵심기구이지만, 모든 국정분야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 상시적 개최가 어렵고 이에 따라 아동정책에 대한 면밀한 조정과 심의도 어려운 실정임. 실제로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2022년 1월까지 연평균 1회 미만인 16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을 따름임.

- 제정안에서도 현행 「아동복지법」과 동일하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33) 지상파·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광고, 홈쇼핑 방송내용의 공정성·객관성 등을 사후 심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물, 불법촬영물, 명예훼손 등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해 삭제·차단함.

국무총리 소속(위원장 국무총리)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여성가족부 소속(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두면서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등 관련 부처의 차관을 정부측 당연직 위원³⁴⁾으로 하고 있음.

□ 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관계 부처(청) 의견 >

부처(청)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정부위원 추가) 미래에 환경을 향유할 주체인 아동이 환경정책에 갖는 관심과 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환경부가 아동 정책 관계 부처로서 참여가 필요함. 경찰청, 식약처는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위원 추가 불필요. ○(민간단체의 민간위원 추천) 아동권리 관련 민간단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민간단체의 추천만으로 위원의 적합성 담보가 어려우며, 타 정부위원회들도 민간위원 임명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상황 등을 고려 필요함(「자살예방법」 제10조의2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등 입법례 고려)
행정안전부	○제정안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임. 최근 유사·중복 위원회 남설에 대한 국회의 지적과 국민 비판, 위원회 설치 최소화 기조 등을 고려, 위원회 신설에 신중할 필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필요 시 기능이 유사한 현행 「아동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통합 또는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국세청	○국세청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이 불가하나 각 호의 예외적인 사유에 따라 제공이 가능함. 그러나, 제정안에서는 과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추후 과세 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정안만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공 할 수 없음. 이에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을 명시적으로 수정 또는 별도의 자료제공 요구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며, 국세청과 협의가 필요함.

34)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측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장

자. 아동권리옹호관의 설치 및 진정제도 도입(안 제20조)

- 제정안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권리옹호관을 두도록 함(안 제20조).

구 분	제정안
아동권리 옹호관	○ 명칭: 아동권리옹호관 ○ 소속: <u>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u> ○ 임무 - 아동권리 침해상황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시정 등 개선안 권고 -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요구
진정	○ 주체: 아동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아동권리옹호관제도는 행정권력의 감시 및 통제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반영되기 힘든 아동의 의견을 대변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진정 제도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권리 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2022년 5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32개 기초지자체에서 아동권리옹호관 또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한편, 제정안에서는 아동권리옹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에 두고 있는데, 행정권력의 감시 및 통제를 위해 요구되는 독립성,

아동인권보호수단으로서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과 조직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아동권리옹호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개선권고, 개선권고 이행 실태 점검 등의 사항과 함께 연차 및 조사 보고서 등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결격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인적 구성에 대한 신뢰성을 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 참고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2조³⁵⁾)에서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면서,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2³⁶⁾)에서 군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권리옹호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운영비·회의 참석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회예산 정책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4억 1,500만원(연평균 2억 8,300만원³⁷⁾)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그 외에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제정안에서는 아동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그 사실을

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 (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3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37) 2024. 7. 기준 아동권리옹호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5명인 위촉위원으로 아동권리옹호관을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결과값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5항).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직유관단체 및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시 기본권 침해를 당하거나, 법인·단체·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평등권을 제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 주체를 제한적으로 정함)³⁸⁾.

이에 따르면, 개별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진정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벗어나는 경우 진정이 각하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 침해 조사·구제 및 진정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학대 신고 절차는 구체적 내용이므로 이를 기본법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3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부처(단체)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 침해 상황 조사 및 구제 기능,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어 중복적 규정임.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 「아동기본법안」은 아동학대에 더하여 여러 아동권리 침해를 신설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도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음. 현재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가 매우 추상적·포괄적이고, 의심만으로도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시 최고 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생들에게 적극적 신고를 독려하는 교육을 하고 있음. ○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무혐의처분,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아동학대(또는 아동권리 침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 즉, 인권위가 사법기관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으로써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됨. ○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고려해 볼 때, 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의 ‘등’에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낙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큼.

차. 아동친화적 사법절차 마련(안 제21조)

- 제정안은 국가가 아동친화적 사법절차, 사법절차에서 아동이 의사를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 등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함(안 제21조).

제21조(아동친화적 사법절차) ① 국가는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법절차에서 아동이 의사를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은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현행법상 주로 성범죄 등의 경우, 아동이 피해자로 증언을 할 때 신뢰관계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³⁹⁾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재판절차에서는 직접 법정 출석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⁴⁰⁾의 아동친화적 사법절차가 마련되어

- 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⑥ (생략)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생략)

있는바, 성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제정안에서 아동친화적 방향을 제시한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망
 - 나. 외국 거주
 -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 라. 소재불명
 -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0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④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⑤ (생략)

⑥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에게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19세미만피해자등은 제1항의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및 증인으로 출석할 장소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중계시설을 통하여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중계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장소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원이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카. 부칙 등(안 부칙)

- 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음.
- 제정안 중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의 내용은 현행 「아동복지법」 내용과 유사·중복되는바, 이에 대하여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거나 제정안과 중복되는 「아동복지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겠음.
- 그 외, 아동권리보장원의 경우 아동정책 수립 등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아동기본법」이 제정(2022. 6.)되어 총리대신 직속기관·내각부 외청으로 아동가정청이 설치·운영 중임(2023. 4.). 아동 정책구조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우리나라도 아동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가진 기관 창설 필요성과 아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본 아동가정청의 운용 방향 및 경험을 참고할 필요도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500